

서울특별시 중구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중구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제 66조의2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1년 2월18일

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



1. 제정이유

고령사회로 접어든 시대상에 발맞춰 근로자 고용 시 노인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노인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, 실질적인 연령차별 금지와 노인들의 취업 촉진을 통해 노인의 전문성과 경험, 재능을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(안 제1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(안 제3조)
- 다. 노인차별금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항을 규정(안 제4조)
- 라. 우대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(안 제5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(을지로6가 18-14) 의회사무과
- 전화 : 02)3396-8157 팩스 : 02)3396-9055
- E-mail : queen@junggu.seoul.kr

서울특별시 중구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 제23조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11조,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대한 취업차별을 없애고 노인 채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원칙)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.

② 서울특별시 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노인 일자리 창출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어야 하며, 노인은 채용 시 사회경제적·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. 다만,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5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.

③ 구의 근로자 채용에 있어 노인은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「노인복지법」 및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과 그 밖의 노인관련 법령,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노인 취업차별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교육 및 홍보) ①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노인 취업차별금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구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노인 취업차별금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5조(우대조치) 구청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직무분야를 채용할 경우 해당 경력을 소유한 노인을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